

대학 구조혁신 및 정원 조정에 관한 규정

제정 2014. 01. 22.

제7차 개정 2020. 05. 04.

제1조(목적) 이 규정은 급변하는 대학교육 환경 및 정부의 대학정책에 대응하여 교육의 질을 향상시키고 경쟁력을 강화할 수 있도록 단과대학, 학과(부) 및 학부 내 전공(이하 “학과”라 한다) 단위의 신설, 폐지, 통합, 정원조정 및 소속 단과대학 변경 등 교육편제의 조정에 관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0.03.20)

제2조(정의) ‘대학 구조혁신 및 정원조정’(이하 “구조혁신”이라 한다)이란 단과대학, 학과의 신설, 통합, 폐지, 명칭변경, 정원의 증원과 감원을 말하며,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학과신설’은 새로운 학과를 개설하는 것을 말한다.
2. ‘학과폐지’란 학칙 제3조 모집단위 및 입학정원표에서 모집단위 및 입학정원이 삭제됨으로써 신입생 모집이 중지되는 것을 말한다.
3. ‘학과통합’이란 기존의 2개 이상의 학과를 1개 학과로 합하는 것을 말한다.
4. ‘정원조정’이란 학과단위의 입학정원을 증원 또는 감원하는 것을 말한다.
5. ‘소속 단과대학 변경’이란 학과통합과 같은 교육편제 조정으로 학과의 소속이 타 단과대학으로 변경되는 것을 말한다.

제3조(구조혁신의 원칙) 구조혁신은 다음 각 호의 원칙에 의한다.

1. 대학교육과 환경변화에 능동적으로 대처
2. 정부의 대학 구조조정 지침 이행
3. 대학발전계획에 의한 정책의 수행
4. 대학재정의 효율적 운영에 기여
5. 대학의 평가지표 향상 및 교육부 구조개혁 평가 대비를 위한 조정(신설 2016.05.02)
6. 중장기발전계획에 근거한 조정(신설 2016.05.02)

제4조(구조혁신의 절차) ① 구조혁신은 기획평가처에서 관장한다. (개정 2019.06.25)

② 구조혁신은 새 학년도 등록 마감 후 계획안을 수립하여 매 학년도마다 실시할 수 있다.

③ 기획평가처는 구조혁신에 필요한 자료와 의견을 관련부서와 단과대학 및 해당 학과에 요청할 수 있다. (개정 2019.06.25)

④ 구조혁신 절차는 다음과 같다.(개정 2016.05.02)

1. 기획평가처장은 학사구조혁신방안 및 입학정원조정안을 도출한다. 단, 도출과정에서 필요시 구성원 의견수렴 과정을 거칠 수 있다. (개정 2017.06.20., 2019.06.25)

2. 대학구조혁신위원회 심의

3. 교무위원회 심의

4. 대학평의회 심의

5. 이사회 승인

6. (삭제 2020.03.20)

7. 기타 필요한 절차

⑤ (항 신설 2015.07.22.) (개정 2016.05.02.) (삭제 2020.05.04.)

제4조의2(위원회) 구조혁신 계획안을 심의하기 위하여 대학구조혁신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1. 위원회 구성은 교육부총장, 교육연구처장, 기획평가처장을 포함하여 15인 이내로 구성한다.

2. 위원회 위원은 학사구조 개편 및 학생정원 조정업무에 경험이 있는 자, 전문성을 가진 자를 총장이 위촉한다.
3. 위원장은 교육부총장으로 하고, 위원회를 대표하며 회무를 통할한다.
4.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리한다.
5.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및 서기를 각 1인씩 둘 수 있다.
6.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최하며,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7. 위원의 임기는 1년으로 하며, 연임할 수 있다. 다만, 당연직 위원의 임기는 보직재임기간으로 한다. 결원 등으로 인하여 새로이 위촉하는 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잔여임기로 한다.

[본조신설 2020.05.04.]

제4조의3(소위원회) ① 위원회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소위원회를 둘 수 있다.

② 소위원회 위원장은 소위원회 심의 경과와 결과를 서면 또는 구두로 위원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③ 소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위원장이 별도로 정한다.

[본조신설 2020.05.04.]

제5조(구조혁신의 기준) ① 학과신설은 학생모집과 취업에 경쟁력 있는 전략 육성 분야로 하며, 입학정원 범위 내에서 자체 조정하여 신설한다. (개정 2016.05.02, 2017.06.20)

② 학과를 유지하기 위한 최소 입학정원은 계열 구분 없이 25명(야간 20명) 이상을 원칙으로 하며, 매 학년도마다 신입생 모집 경쟁력을 감안하여 증감할 수 있다.

③ 구조혁신을 위하여 학과별 평가가 필요한 경우 다음 각 호의 평가 지표를 기준으로 한다. 단, 각 호의 평가지표 산출 및 적용방법은 총장이 따로 정한다. (개정 2016.05.02., 2017.06.20)

1. 신입생 충원율 (신설 2017.06.20)

2. 재학생 충원율 (신설 2017.06.20)

3. 졸업생 취업률 (신설 2017.06.20)

4. (신설 2017.06.20.) (삭제 2020.03.20)

5. 그 밖에 총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평가 지표 (신설 2017.06.20)

④ (삭제 2016.05.02)

⑤ 제3항에 따라 해당하는 구조혁신 대상 학과에 대하여 그 증원과 감원의 시기 및 규모와 학과폐지의 적용 시기는 대학구조혁신위원회에서 정한다.

⑥ (삭제 2016.05.02)

제6조(학과폐지) 학과평가 결과에 따른 학과폐지는 대학구조혁신위원회에서 정하며, 교무위원회 및 대학평의원회 심의를 거쳐 법인 이사회의 승인을 득하여야 한다.

제7조(폐지된 학과의 교원 및 학생) ① 제2조에 의한 학과폐지, 학과통합의 경우와 대학정책에 따라 다른 학과로 소속이 변경되는 교원에게는 교내연구비, 연구년제 및 연수에 우선적으로 기회를 부여할 수 있다.

② 구조혁신에 따라 소속이 없어진 교원의 경우 학교법인 상지학원 산하 타 학교로 전환 배치 할 수 있고, 본인의 희망에 따라 명예퇴직을 신청할 수 있다. 명예퇴직의 절차와 세부사항은 '교직원 명예퇴직수당 지급규정'에 의한다. (개정 2016.05.02)

③ 학과폐지 결정이 된 학과의 재적생은 본인이 희망하는 다른 학과로 전과를 허용하며,

세부사항은 학칙이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8조(준용규정) 이 규정에 명시되지 아니한 사항은 관련 규정을 따르며, 관련 규정에 명시되지 아니한 사항은 총장이 따로 정한다.

부칙 (기획예산부-59, 2014.1.22)

이 규정은 2014년 1월 22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기획예산부-437, 2015.7.22)

이 규정은 2015년 7월 22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기획예산부-333, 2016.05.02)

이 규정은 개정 공포일로부터 시행하며, 2017학년도 학사구조개편 및 학생정원 조정시부터 적용한다.

부칙 (기획예산부-273, 2017.06.23)

이 규정은 2017년 6월 20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기획예산팀-89, 2019.02.18)

이 규정은 2019년 02월 18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기획예산팀-330, 2019.06.25)

이 규정은 2019년 06월 25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기획예산팀-193, 2020.03.20)

이 규정은 2020년 03월 20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기획예산팀-310, 2020.05.04)

이 규정은 2020년 05월 04일부터 시행한다.